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혜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083 발의연월일: 2024. 9. 19.

발 의 자:정혜경·백승아·서미화

허성무 • 전종덕 • 이재강

김 윤·한창민·김준형

윤종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가 지켜야할 안전의무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'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'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주간 작업, 3인 1조 작업 등 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,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 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또한, 2018년 관계부처 합동회의로 "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" 이 발표되었으나,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 280명, 부상 30,358명이 발생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음.

이에 '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'으로 권장하고 있는 안전기준 사항을 이 법에 명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5제2항).

법률 제 호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5제2항 중 "안전기준"을 "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안전기 준, 적용 대상 등"을 "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적용대상, 안전기준 준 수를 위한 세부사항 및 그밖에"로 한다.

- 1.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
- 2.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
- 3.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· 운영할 것
- 4. 안전화, 안전조끼,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
- 5. 폭염, 강추위, 폭설, 폭우, 강풍, 미세먼지 등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고, 작업시간의 조정 및 작업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의5(생활폐기물 수집・운	제14조의5(생활폐기물 수집・운
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① (생	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생활폐기물을 수집 · 운반하	2
는 자는 <u>안전기준</u> 을 준수하여	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
야 한다.	
<u><신 설></u>	1.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
<u><신 설></u>	2.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할
	<u>것</u>
<u><신 설></u>	3.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
	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
	설치・운영할 것
<u><신 설></u>	4. 안전화, 안전조끼, 장갑 등
	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
	지급할 것
<u><신 설></u>	5. 폭염, 강추위, 폭설, 폭우, 강
	풍, 미세먼지 등 기상이변에
	대응하는 조치를 하고, 작업
	시간의 조정 및 작업중지 등
	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
③ <u>안전기준, 적용 대상 등</u> 필	③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의
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	적용대상, 안전기준 준수를 위
한다.	한 세부사항 및 그밖에